

인천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나526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최지혜

변론 종결 2020. 5. 13.

판결 선고 2020. 6. 10.

제 1 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소3683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2016. 3. 10. D와 원고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그 무렵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16. 5. 25. 2,901,000원, 2016. 6. 28. 1,000,000원, 2016.8. 8. 7,000,000원 합계 10,901,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C과 D는 2016. 8. 6.부터 2016. 9. 1.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 및 향후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원고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D는 별다른 원인 없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10,901,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 회사의 선글라스 사업부에 근무한 대가로 2016. 5. 25. 2,901,000원, 2016. 6. 28. 1,000,000원을 받았고, 원고로부터 2016. 8. 8. 받은 7,000,000원은 피고가 E의 축하영상 제작대행 업무를 수행한 대가를 원고가 대신 받은 뒤 피고에게 다시 이체해 준 것이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던 D의 자금 집행에 기하여 10,901,000원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승인 없이 원고 회사 자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피고가 월급, 축하영상 제작대행 업무 대가로 10,901,000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1) 선글라스 사업부 근무 대가 3,901,000원

갑 제3,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선글라스 사업부의 근무 대가로 3,901,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자신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원고로부터 2016. 5. 25.에 2,901,000원, 2016. 6. 28.에 1,000,000원만을 받았다. 피고가 6개월 동안 2차례에 걸쳐 일정하지 않은 돈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고용관계의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D는 C으로부터 원고 회사를 양수하면서 2016. 3. 14. 회사 등기부에 행사대행업, 경영자문컨설팅업, 전자통신기기 제조 및 도매 등의 목적을 추가로 등기하였으나, 선글라스 제조·판매업은 등기하지 않았다.

④ 원고 회사가 선글라스 제조·판매업을 원고 회사의 계산으로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⑤ 원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근무하였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는 D의 연인으로 원고 회사에 놀러오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를 한 적이 없고, 선글라스 판매 사업으로 수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2) 축하영상 제작대행 업무 7,000,000원

을 제5, 6,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E와 축하영상 제작대행 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 회사가 E의 관련회사인 G로부터 5,5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와 업무에 관하여 연락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D이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나아가 피고가 받은 7,000,000원은 위 5,500,000원과 금액적인 차이가 있어 피고가 축하영상 제작대행 약정의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D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지 여부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그러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6.8. 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 참조).

2) D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C와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대표이사 C이 경영권한을 D에게 양도하였으므로, D는 원고 회사를 경영하고 자금을 집행할 권한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D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10,901,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D가 원고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제3자인 피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10,901,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고, D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D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10,901,000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한편,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참조).

원고는 2019. 3. 8.자 의견서에서 D는 원고 회사 자금의 횡령으로 조사를 받고있고, 피고는 D의 애인으로서 원고 회사 자금을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2019. 9. 18.에는 D가 원고 회사의 자금횡령 피의사실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항고이유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고, 2019. 10. 29.에는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받은 용역비는 횡령이라는 취지의 F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과 서증의 제출에는 D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원고 회사와 무관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10,9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재환, 판사 송한도, 판사 박정미